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1359 제안년월일 : 2020년 2월 28일
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제안이유

○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하여 대부료율을 하향 조정하여 지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감염병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부료 요율을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(안 제26조제1항 단서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생략)

다. 기 타 : 신·구 조문대비표 별첨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항 후단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산관리인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 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위기경보 발령일이 속하는 달의 시작일(2020년 2월 1일)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적용시한)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26조(대부료의 요율) ① 영 제3 | 제26조(대부료의 요율) |
| 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 | |
| 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| |
|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 | |
| 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,0 | |
| 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, 공유 | |
| 림 등을 광업·채석을 목적으로 하 | |
| 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 | |
| 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 | |
| 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| |
| 입목,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 | |
| 가하여 징수한다. <u>〈단서 신설〉</u> | <u>다만, 지방자치단체</u> |
| | 의 장 또는 재산관리인은 「감염 |
| |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|
| | 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「재 |
| |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 |
| | 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|
| | 발령된 경우 약정한 대부료의 요 |
| | 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,000분 |
| | 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. |
| ②~⑦ (생 략) | ②~⑦ (현행과 같음) |